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-1096호

2024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목적, 지원규모 및 대상, 선정 기준, 사업신청 구비서류,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

#### 1. 사업의 목적

- o 국가인증 친환경선박을 신조 또는 대체건조하는 민간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선박 전환수요 창출 및 민간보급 확산
- **2. 신청기간**: 2024. 11. 8.(금) 9:00부터 ~ 2024. 12. 5.(목) 18:00까지

#### 3. 신청 자격

-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친환경선박을 건조 후 다음각 항의 어느 하나의 지위를 얻을 예정인 민간사업자
  - ①「해운법」제4조제1항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
  - ②「해운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
  - ③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또는 도선 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한 자
  - ④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
  - ⑤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5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
  - ⑥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
  - ⑦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

- ⑧ 「수산업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, 같은 법 제40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 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
- ⑨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또 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
- ① 「내수면어업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,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, 같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업 신고를 한 자

## 4. 지원대상, 규모 및 후보자 선정 기준

- (지원대상) 신청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업공고일('24.11.8.) 기준 해당 연도\*에 친환경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자
  - \* 사업 공고일 기준 해당 연도 잔여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 공고일 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('25.5.7.)까지 친환경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해야 함
- (지원규모) 국내 친환경인증선박<sup>\*</sup>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하여 '24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워
  - \* 「친환경선박법」 제6조 및 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8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를 발급받은 선박
- o (지원기준) 선박 건조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차등지원\*(붙임4 참조)
  - \* 건조가격 200억원 이하 : 선가 30%, 200억원 초과~300억원 이하 : 20%, 300억원 초과 : 10%
- ㅇ (선정기준)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기준(붙임5)에 따름

## 5. 지원대상자 의무사항

○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(이하 '지원대상자')는 예비인증서의 기재사항대로 친환경선박이 건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「환경 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1항에 따른 '환경 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서'를 발급받고,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

- o 친환경선박 인증심사를 포함하여 의무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해야 함
- 지원대상자는 제7조에 따라 사업신청 서류로 제출한 공정계획표 및 「친환경선박 인증규칙」제9조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에 맞게 선박을 건조해야 하며,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까지 공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함. 또한, 사업계획이 변경 될 경우 1개월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함
- 지원대상자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사업실 적 보고 및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·제출 의 무를 이행하여야 함. 이 경우 의무의 이행에 따르는 비용은 지원 대상자가 부담해야 함
- o 지원대상자는 선박 건조완료 이후 최소 7년 동안은 제3자에게 매각하여서는 아니되며, 선박 소유권 등기를 할 때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(附記登記)를 하여야 하고, 선박소유자의 변경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매년 1월 31일까지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
- 지원대상자 중 「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」제3조 각 호의 지위를 얻을 예정으로 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선박 건조완 료 후 해당 지위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(면허 등)를 발급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
- 지원대상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.
   이 경우 계약기간은 선박 건조 공사 완료까지이며, 건조 공정 지연시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함
- 지원대상자는 「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」제14조에 따라 선박 건조 완료 후 온실가스 감축 효과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함

- 지원대상자는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 등을 통한 계약체결 의무를 이행해야 함
- 기타 본 사업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
  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,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
   등 관련 규정에 따름

#### 6. 사업신청 구비서류

- ①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신청서 1부(붙임1 참조)
- ② 친환경인증선박 사업 계획서 1부(붙임2 참조)
- ③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1부
- 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(붙임3 참조)
- ⑤ 지원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
  - \* 동 지침 '3.신청 자격'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·등록증 등
- ⑥ 기업 건실도 평가 증빙자료(붙임6 참조)
  - \* 공인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발급이 안되는 경우 잔고증명서 및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,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다.
- ⑦ 자기자본 증명용 통장잔액 확인서(금융권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)
- ⑧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내역서(붙임7 참조)
- ⑨ 선가내역서(붙임8 참조)
- ⑩ 공정계획표(별도 사용하는 양식으로 대체 가능함, 붙임9 참조)
- ① 기타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
  - \*「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」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, 관련 증빙서류

#### <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 발급 절차 >

- ●예비인증 신청서 제출(신청자) ⇒
   ②인증심사·평가 및 등급 결정(KOMSA)
   ⇒
   ●인증결과 안내 및 예비인증서 발급(KOMSA) ⇒
   ●선박건조(신청자) ⇒
   ●건조완료 후 현장실사(선박검사기관) ⇒
   ⑥최종 인증서 발급(KOMSA)
- \*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」의 세부 절차에 따르며,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(044-330-2251, 2555)에 문의 (예비인증 최소 3주 소요)

#### 7. 신청 방법

- 해양수산부 누리집(www.mof.go.kr, 알림 → 공지사항),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누리집(www.komsa.or.kr, 소식 → 공지사항)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우편제출 또는 온라인 접수
- o 신청서 제출방법 : **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** 
  - \*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, 전자우편(e-mail) 접수는 불가능
- ㅇ 우편 접수
  - 주소 : (30100)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(아름동),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본관동 6층 미래사업실
  - 전화 : 044-330-2564, 044-330-2565
- ㅇ 온라인 접수
  - 접수사이트 : 친환경선박 통합지원시스템(www.친환경선박.kr)

## 8.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

- 신청서 접수(사업자→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) : 2024. 11. 8.(금) ~ 12. 5.(목)
- 신청서 확인(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) : 2024. 12. 6.(금) ~ 12. 11.(수)
- ㅇ 후보자 선정 심사(심사위원회) : 2024. 12. 16.(월)

- 지원대상자 선정·통보 : 2024. 12. 20.(금)
  - \* 심사위원회 및 지원대상자 통보 일정은 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# 9. 기타 사항

- o 지원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제출 전에 「친환경인증선박 보급 지원사업 시행지침」과 본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
- 후보자 선정 심사 등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후보자 선정 심사 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ㅇ 제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o 기타 사업 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(044-200-5843)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미래사업실(044-330-2564)로 연락 하시기 바람

## (붙임) 1. 친환경인증선박 보급 지원사업 신청서

- 2. 친환경인증선박 사업 계획서
- 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4. 신조선 선가에 따른 친환경선박 등급별 보조율
- 5.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기준
- 6.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기업 건실도 평가
- 7.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내역서
- 8. 선가내역서
- 9. 공정계획표

## (붙임 1)

■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[별지 제1호서식]

#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신청서

사업자

(위탁기관)

※ 바탕색이 접수번호	《 바탕색이 어두운 단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접수번호 접수일자												
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											
	업체명				사업자등록번호								
	소재지					전화번호							
신청자	대표자성	대표자성명				이머	일						
	사업면하	네의 종류											
	자본금		만원		선박보	유량	척		G	<b>/</b> T			
		건조선박	])	G/T OWT)		선	종						
		총 건조비		만원	건조	계약	(예정)일			.경			
		건조일정	· · ·										
신청	건조계획			<u>l</u> 청		연도별		연도별	자금조달 계획				
내용		선소계획 건조자금조달		1차년 2차년			3차년		자기자금 조달	달방법			
		총계(@+⑥)	백만원		백	만원	백	만원					
		대출금(@)	백만원		백	만원	백	만원					
		자기자금(⑥) (보조금 포함)	백만원	백만원		원 백만운							
 「친환경	인증선박	보급지원사업 시행	지침」제7조에 따라	위외	· 같이 신	청합	·니다.						
								L	년 월	일			
			시쳐이					'	c e	=			
	01.1.1.1		신청인						(서명 또는	인)			
	양수산두	부장관(위탁기관장	) 귀하										
첨부	첨부 서류       1. 친환경인증선박 사업 계획서(별지 제2호)         2.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(별지 제3호)												
	처리 절차												
신청	서 작성	→ 접 수 →	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	지원 <sup>[</sup> 선정	   상 후보자   및 통보	<b>→</b>	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	→	보조금 지 급				
	IOITI	해양수산부	ALLIOIOI÷I	ALLOION MICHAEL		레아시니니		해양수산부					

심사위원회

심사위원회

(위탁기관)

해양수산부

# (붙임 2)

■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[별지 제2호서식]

# 친환경인증선박 사업 계획서

1. 사업의 7	개요
----------	----

0

0

## 2. 친환경선박 건조 대상 선박

, 세면	(G/T) 재화중량	항해구역	□ 국내 연안 □ 평수 구역(내수면 등)
주요 제원	용도  총톤수	승선인원	□ 국제 외항
선박	선적항	깊이[m]	
	선종	너비[m]	
	선명	길이[m]	
	대표전화	전자우편	
신청자 (소유자)	주소	대표자 성명	
11+1+1	상호명	사업자 등록번호	

## 3. 친환경선박 적용기술

imes 아래 해당사항에 "u" 표기 및 작성 바랍니다.

	ᄎᄭᆈᆺᆐ	□ 화석연료 □ LNG	□ LPG □ 배터리
	추진시스템	□ 암모니아 □ 수소	□ 하이브리드 □ 기타( )
적용 기술	대기오염물질	□ 질소산화물 배출저감설비	□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장치
12	저감설비	□ 황산화물 배출저감장치	
	기타	□ 기술의 명칭 :	

# 4. 소요자금 내역

(단위 : G/T, 척, 만원)

선박 종류	규 모 (GT)	건조 척수 (a)	건조 가격 (®)	총 투자액 (a×b)	타인자본	자기자본	비고
계							

## 5. 자금조달방안

# ① 건조자금 구성 및 조달 방안

자금 종류	금 액	비율	조달방법	비고
대출금				
보조금				
자기자본			5-② 자기자본 조달방안 참고	
계		100%	-	-

# ② 자기자본 조달 방안

자금구분	세부조달계획	금 액	비율	증빙자료
계			100%	-

## 6. 선박건조 공정 계획

선박건조 공정 계획	일 정
o 계약 체결	
o 강재절단	
o 선각공사 완료	
o 추진시스템 설치완료	
o 진수	
ㅇ 인도	

※ 일정은 년, 월 기재

#### 7. 운항계획서

- ㅇ 정박지, 운항구역, 운항거리(1회), 운항시간(1회), 운항속력, 일운항횟수 등
- ※ 구체적으로 작성
- 8. 에너지 충전시설 구축계획서
  - ㅇ 에너지 충전시설 현황

정박지	충전에너지	구축현황	충전시설 주소지	충전시설 제조사	비고
	전기 LNG	<i>구축중,</i> 구축완료, 계획중			

- o 현장사진(구축완료인 경우에 한함)
- ㅇ 충전시설 구축계획
- 지자체와의 설비 구축 협약, 자기자본을 활용한 설비 구축 등
- ※ 구체적으로 작성
- 9.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시 기대효과
  - ㅇ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
  - o 친환경선박 민간 보급 확산 기여에 미치는 영향 등
  - ㅇ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 등
  - ※ 구체적으로 작성

#### (붙임 3)

■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[별지 제3호서식]

# **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**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• 이용 동의서

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5조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및 제22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자 합니다.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, 동의 여부를 체크,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<sup>0</sup>	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					
수집•이용 목적	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신청서 확인,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계약 절차 수행 및 사업관리					
수집・이용항목	<ul> <li>▶ 필수항목</li> <li>• 개인 및 선사·선박 식별정보(성명, 연락처, 주소, 신상사항 등)</li> <li>•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(통장잔액 증명서 등 첨부서류 정보 포함)</li> </ul>					
	<ul> <li>▶ 지원대상자 선정 시 필수항목</li> <li>◆ 세금계산서 등 보조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</li> <li>◆ 예금주: 계좌번호, 입금은행, 예금주명</li> </ul>					
보유・이용기간	친환경인증선박 신청 기간 및 지원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, 사업 종료 후 7년간 보유					
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	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제공사항은 지원대상자 심사, 선정 및 보조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.					
수집ㆍ이용 동의 여부	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,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필수정보 (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 ) 선택정보 (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 )					

본인은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,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
녀	워	O
근	=	=

<u>(신청인) 성명 : (서명 또는 인)</u>

## 해양수산부장관(위탁기관장) 귀하

## (붙임 4)

■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[별표 1]

# 신조선 선가에 따른 친환경선박 등급별 보조율

신조선 선가	등급	보조율(최대)	최대 지원 금액 한도
	1등급	선가의 30%	50억원/척
200억원 이하	2등급	선가의 28%	50억원/척
	3등급	선가의 26%	50억원/척
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	1등급	선가의 20%	50억원/척
	2등급	선가의 18%	50억원/척
	3등급	선가의 16%	48억원/척
	1등급	선가의 10%	50억원/척
300억원 초과	2등급	선가의 8%	50억원/척
	3등급	선가의 6%	50억원/척

<sup>※</sup> 다만, 제4조 제3항에 따라 최대한도(척당 50억원)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<sup>※</sup> 또한, 등급별 보조율은 당해연도 예산, 사업신청 현황,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
#### (붙임 5)

■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[별표 2]

##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기준(제9조제4항 관련)

심사항목	배 점		심 사 기 준								평	점			
신조선박		□ 신조선박 친환경 인증등급별 점수 (예비인증서의 등급)													
친환경도	40점		등급			1	2			3					
(40)			젇	i수	È .			37			34				
		□ 기업 신용평가 등급													
기 업		ㅇ 신용평가 등급표에 따른 평가 (별표2의1)													
건실도	20점		구분			신	용평	가구	그간						
(20)			구간	1~2	2	3~4			5~6		70	하			
			점수	20		17			14		11	l			
			사업계	획의 충	실성										
			ㅇ 평가항목별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												
			평가항목				평가점수								
	40점		경기정국					수	적합	보통	미흡	평점			
사업계획			제출 자료의 충실성 (충전시설 구축방안, 기대효과 등)					8	6	4	2				
타당성 (40)				자기자금 조달방안 (보조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평가)				8	6	4	2				
			선가내역서의 타당성				8	8	6	4	2				
			-	조 공정기 지급시기	계획 를 고려하여 평가)		8	8	6	4	2				
			온실가스 감축 기여도					8	6	4	2				
			합 계												
가점	-		□ 국가 연구개발사업(R&D)을 통해 개발된 국산 신기술 및 제품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신청자(5점)												
감점	-	□ 최근 2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신청자(5점) □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대상 지위를 포기한 경우 또는 의무 불이행으로 선정이 취소되거나 보조금이 환수된 이력이 있는 신청자(5점)													
총 점	100점						-								

- 1)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사점수는 당해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합계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함
- 2) 심사위원 합계점수의 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에서 탈락
- 3) 총점이 동일할 경우 신조선박 친환경도, 사업계획 타당성, 기업 건실도의 평점이 높은 순으로 순위 부여
- 4) 가점 항목에 해당될 경우, 연구관리전문기관 결과보고서 및 신조선 적용 여부를 증명하는 건조사양서, 구매계약서 일체 등 증빙자료 제출
- 5) 지원대상 선박의 특성상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전기추진설비 등 친환경 설비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사업계획 타당성 항목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

#### (붙임 6)

■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[별표 2의1]

##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기업 건실도 평가

#### □ 기업 건실도(20점)

- o 회사채, 기업어음, 기업신용평가 등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업체의 전반적인 경영 상태 및 수행능력을 4단계로 평가(신청업체가 4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 택일 가능)
  - \* 기업신용평가등급은 한국신용평가, 나이스평가정보, 한국기업평가, 나이스디앤비 등 국내 공인신용평가사에서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함
- ※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기업 건실도 평가기준 예시(NICE평가정보 KIS신용평가 예시)

(단위 : 점)

			신용평가등급	
KIS신용 평가모형	회사채	기업어음	기업신용평가등급	평 점
신용평가 구간 1~2	AAA AA+, AA0, AA- A+ A0 A-	A1 A2+ A20 A2-	AAA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) AA+, AAO, AA-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+, AAO, AA-에 준하는 등급) A+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+에 준하는 등급) AO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O에 준하는 등급) A-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-에 준하는 등급)	20
신용평가	BBB+	A3+	BBB+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+에 준하는 등급)	
구간	BBB0	A30	BBBO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O에 준하는 등급)	17
3~4	BBB-	А3-	BBB-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-에 준하는 등급)	
신용평가	BB+, BBO	B+	BB+, BBO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+, BBO에 준하는 등급)	1.4
구간 5~6	BB-	ВО	BB-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-에 준하는 등급)	14
신용평가 구간 7이하	B+, B0, B-	B-	B+, BO, B-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+, BO, B-에 준하는 등급)	11
	CCC+ 이하	C 이하	CCC+ 이하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+에 준하는 등급)	11

- ※ ① 신용평가등급은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, 기업어음,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.
  - ② '신용평가등급 확인서'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.
  - \* KIS 신용평가모형 : 자산규모와 재무제표 연속보유기간에 따라 모형을 세분화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기반으로 산업을 구분하여 기업의 재무적 신용도를 구간 값으로 제시한 것 (NICE신용평가정보)
- ※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기업 건실도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동 기준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## (붙임 7)

■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[별지 제4호 서식]

# 온실가스<sup>\*</sup> 감축량 산정내역서

	구 분	기존선박**	신조예정선박
	총톤수[TON]		
	적용기술		
순항속도	E(at MCR 75% Power) [knots]		
	모델명		
추진기관	연속최대출력(MCR) [kW]		
	① MCR의 75% [kW]		
	연료 종류		
연료	② 연료소모량 (at MCR 75% Power) [g/kWh]		
	③ CO <sub>2</sub> 환산계수***(C <sub>F</sub> ) [t-CO <sub>2</sub> /t-Fuel]		
(	④ 연간운항시간 [hr/year]		
(5) = (1)	x ② x ③ x ④ x 10 <sup>-6</sup> 연간CO₂배출량 [ton/year]	6	7
	⑥-⑦ 연간CO₂감 [ton/year]	축량	
	감축률((1-⑦/⑥)x1 [%]	00%)	

- \* 온실가스란 연소를 통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(CO<sub>2</sub>)에 한함
- \*\* 기존 선박이 없는 경우 기존선박은 유사규모, 선종의 사례를 비교하여 작성할 것
- \*\*\* CO<sub>2</sub>환산계수 "C<sub>F</sub>"는 「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」 별표 1에 명시된 값을 따를 것
- ※ 붙임서류 1) 기존선박의 추진기관 사양, 연간운항시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
  - 2) 선박 운항 프로파일(단, 하이브리드선박에 한함)

## (붙임 8)

■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[별지 제5호서식]

# <u>선가내역서</u>

	구 분	금액(원)	비율(%)	비고
1) 제	조 원 가			
TII	선 각 공 사			
재	의 장 공 사			
료	기 장 공 사			
비	전 기 공 사			
_'	소 계			
	선 각 공 사			
	의 장 공 사			
노	기 장 공 사			
무	전 기 공 사			
비	직 접 노 무 비			
-	간접노무비			
	소 계			
경	직 접 경 비			
	간 접 경 비			
비	소 계			
	기 본 설 계			
설 계	상 세 설 계			
비비	생 산 설 계			
	소 계			
2) 일	반 관리비			
3) 기	업 이 윤			
4) 총	원 가			
5) 부:	가 가치세			
6) 총	선가내역			

<sup>※</sup> 붙임서류 1) 제조원가(재료비, 노무비, 설계비 등) 세부 내역서

<sup>2)</sup> 조선소 견적서(선가내역서)

<sup>※</sup> 외국회사와 계약한 해외제품(엔진, 추진시스템 등)의 금액은 계약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

## (붙임 9)

■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[별지 제6호서식]

# 공정계획표(예시)

표[**(에人)**] 계획 공정

		1M	2M	3M	4M	5M	6M	7M	8M	9M	10M	11M	12M
설계	10.0												
자재구매	20.0												
선체공사	20.0												
의장공사	10.0												
기관공사	10.0												
배관공사	5.0												
전기공사	10.0												
선실공사	5.0												
도장공사	5.0												
시운전	5.0												
공정율(%)	월' 누계	1.0	1.0 2.0	6.0	7.0	8.0 23.0	8.0 31.0	9.0 40.0	14.0 54.0	13.0 67.0	11.0 78.0	11.0	11.0

<sup>※</sup> 본 공정계획표는 예시이며 건조 예정인 선박의 실제 상황에 맞게 편집하여 작성하거나, 조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으로 제출 가능함